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제출 하여 심사·확인 을 받으셔야 합니다!

- ✔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를 설치·이전할 때
- ✔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할 때
- ✔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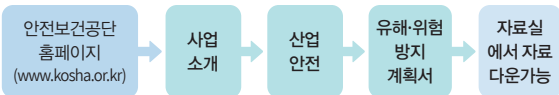
### ○ 제출주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 작성방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7조 참조



※ 제공자료 : 관련법령 및 고시, 신청서, 제출서식 작성모델 등

### ○ 제출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

###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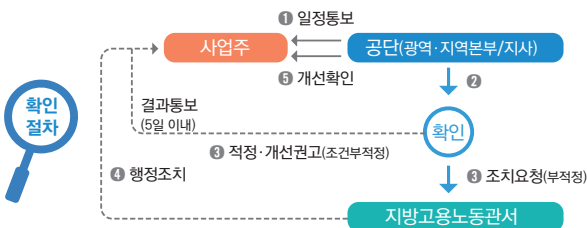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계획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로 제출)

### ○ 제출방법

-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수수료 입금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서 교부



※ 확인일 : 시운전기간 중

-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009.2.1 이후 적용]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2014.9.13 이후 적용]

※ 상기 외 8개 업종 [2012.7.1. 이후 적용]

→ 13개 업종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①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되는 경우
- ②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②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 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 → 특수화학 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계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가열로 또는 가열기

### ③ 건조설비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 ⑤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m<sup>3</sup>/분 이상인 것에 한함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 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m<sup>3</sup>/분 이상인 것에 한함

####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

- |                 |                          |                 |
|-----------------|--------------------------|-----------------|
|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 스티렌           |
|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 디메틸포름아미드               | • 시클로헥사논        |
| • 베릴륨           | • 벤젠                     | • 아닐린           |
| • 벤조트리클로리드      | • 이황화탄소                  | • 아세토니트릴        |
|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 아연(산화아연)      |
| • 석면            |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 아크릴로니트릴       |
|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 트리클로로에틸렌               | • 아크릴아미드        |
| • 염화비닐          | • 포름알데히드                 | • 알루미늄          |
|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 • 크롬광           | • 곡물분진                   | • 용접흄           |
| • 크롬산 아연        | • 망간                     | • 유리규산          |
| • 황화니켈          |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 코발트           |
| • 휘발성 콜타르피치     | • 무수프탈산                  | • 크롬            |
| • 2-브로모프로판      | • 브롬화메틸                  | • 탈크(활석)        |
| • 6가크롬 화합물      | • 수은                     | • 톨루엔           |
|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 • 황산알루미늄        |
| • 노말렉산          |                          | • 황화수소          |

※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2]

※ 분진작업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6]

※ 5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관해서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6호 참조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 3

## 제출 서류 및 수수료

### ○ 대상업종

-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
- 사업 개요(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함
- 설비 및 기계 목록(고시 별지 제4호 서식)
- 유해·위험물질 목록(고시 별지 제5호 서식)
-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고시 별지 제6호 서식)
- 환기장치 개요(고시 별지 제7호 서식)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고시 별지 제8호 서식)
-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 포함)
  -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 범위에 해당하는 수전설비의 전기단선도 제출은 생략 가능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 유해·위험요인 평가서(고시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위험성 평가 결과서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에 한함



### ○ 대상설비

#### [공통서류]

-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작성자 자격증빙자료 첨부)
- 사업개요(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 방폭 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고시 별지 제6호 서식)



#### ① 용해로

-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용해로의 사양서
  -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년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 온도·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시 제어절차 및 대책

#### ② 화학설비

-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경보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유해·위험물질 목록(고시 별지 제5호 서식)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고시 별지 제8호 서식)
- 장치 및 설비명세(고시 별지 제10호 서식)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③ 건조설비

-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건조설비의 사양서
  - ※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 온도·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
-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부속 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전기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

###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 주요 부속설비(소화,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 해당 가스장치실(저장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
-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⑤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유해·위험물질 목록(고시 별지 제5호 서식)
- 환기장치 개요(고시 별지 제7호 서식)
- 해당 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수수료(원)
13개 업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84,000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미만	123,000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이상	183,000
13개 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67,000
5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3기 미만	44,000
	나. 6기 미만	58,000
	다. 6기 이상	67,000
5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36,000

## » 꼭! 알아두세요

### ▶ 중대재해처벌법 공포(2021.1.26.)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규입니다.
- 시행시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후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 또는 경영책임자는 적용 제외

### ▶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 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2021.1.1.부로 시행

#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일선기관명	소재지	관할구역	전화번호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02-6711-2895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중랑구 및 노원구	02-3783-8323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033-815-1035
강원동부지사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033-820-2572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051-520-0505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52-226-0543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055-269-0554
경남동부지사	양산시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055-371-7521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062-949-8741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063-240-8544
전북서부지사	군산시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063-460-3628
전남지역본부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061-288-8752
전남동부지사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061-689-4951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2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032-5100-562
경기북부지사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고양시·파주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031-828-1914
경기중부지사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032-680-6512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259-7121
경기서부지사	안산시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031-481-7516
경기동부지사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031-785-3324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053-609-0542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053-650-6855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054-478-8024
경북동부지사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71-2042
대전세종 광역본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042-620-5651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충청북도	043-230-7123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 및 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태안군	041-570-3433